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

모 두 발 언

2025. 4. 9.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소 영

※ 본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실제 발언내용은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I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모든 참석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도기간 만료(‘25.4.16일)를 앞둔 시점에서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II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의 의의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대출을 연체한 이후
채무자가 겪게 되는 쉼 과정(연체-추심-양도)을
체계적으로 규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채무조정요청권의 도입,
연체이자 부과 방식의 개선,
추심총량제 신설을 통해
과도한 추심 관행을 제한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입법사례*를 벤치마킹(benchmarking)하되, 우리 금융시장 여건을 반영하여 채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 (미국) 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 (영국) Consumer Credit Act (호주) National Consumer Credit Act 등

Ⅲ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현황

그러나,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제도라 하더라도, 이를 실제 이행하는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을 경우 당초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법 시행 이후 지난 6개월간을 평가해 볼 때,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준비'와 '참여'로 비교적 성공적으로 제도가 정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무조정인 경우, 법 시행후 현재('25.3.14일 기준)까지 총 4만 5천여건의 채무조정(신청 5만 6천여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채무조정 유형별로 보더라도,
원리금 감면이 2만 6천여건(33%)으로 가장 많았고,
변제기간 연장(1만 9564건, 25%), 분할변제(1만 2,999건, 16%) 순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연체이자 부과 방식을 개선하여
이자부담을 경감하고,
과도한 추심을 제한한 새로운 제도들*도
현장에서 서서히 안착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 (추심총량제) 추심연락 횟수를 7일 7회 이하로 제한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특정 방식·시간대의 추심연락 금지를 요청 가능
(추심유예제) 채무자의 중대한 재난상황 등에 일정 기간 추심을 유예

IV **개인채무자보호법 안착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이 금융현장에
확고하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향후에도 정부와 금융회사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첫째, 금융회사는 내실있고 전문적인 채무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조정 요청권이
새롭게 도입된 만큼
그 취지와 내용이
금융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임직원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단순한 채무조정 건수 확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채무자 상황에 맞는
실효성 있는 채무조정이 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들이 스스로 방법을 찾는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보증서 대출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와 보증기관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내실있는 채무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채무조정을 통해 재기가 가능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와 보증기관간 '협의'와 '판단' 하에
적절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예: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차주의 여건에 맞는 채무조정 등

정부 또한 채무조정 우수 사례가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몰라서'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각 금융회사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포함한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정책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부 또한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에 홍보물을 비치하고,
서민금융종합플랫폼에 홍보배너를 게시하는 등
정책대상자들이 쉽게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맞춤형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예시: (청년층) 카카오페이 등 모바일플랫폼 활용한 홍보
(사회취약계층)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안내장 등 배포
(연체우려자)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등 취약차주 대상 홍보

셋째,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긴밀하게 소통해야 합니다.

정부는 제도기간 종료 이후에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한편,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업권별 협회에서도
영세 금융회사가
법 적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만, 시장의 규율 확립을 위해서
금융위원회는 향후 금융감독원의 검사시
법 준수 여부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입니다.

V 마무리 말씀

최근 내수경기 부진, 보호무역주의 조짐 등으로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경우,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부문 중 하나가
서민·취약계층입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의 과도한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로써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금융회사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드리며,
정부도 현장과 늘 '소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